제주특별자치도 추진경위와 자치분권 주요내용

국 무 총 리 실
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

목 차

Ⅰ. 추진경위 / 1

Ⅱ. 기본전략 / 4

Ⅲ. 자치분권 주요내용 / 6

1. 자치권 확대 / 7

2. 자치역량 강화 / 10

3.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 / 12

Ⅳ. 향후과제 / 14

【 참고 】 핵심산업 육성 주요내용 / 16

1. 핵심산업 육성 / 18

2. 산업 인프라 확충 및 여건 조성 / 26

Ⅰ.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추진경위

□ **1960년대～1980년대 : 국가차원에서 국제관광지 육성 착수**

○ ‘63년 총리 소속으로 ‘제주도건설연구위원회’를 두고, ‘자유지역’ 가능성 등 검토

○ ‘70년대 들어 ‘중문관광단지’ 개발을 중심으로 국제수준의 관광지 조성 추진

□ **1990년대 : 대규모 관광 거점 개발 추진**

○ ‘91년 ’제주도개발특별법‘ 제정을 계기로 ’94년부터 3개 관광단지, 20개 관광지구 개발 추진

○ 그러나, ‘97년 외환위기 이후, 국내외 투자 위축으로 개발사업 사실상 중단

□ **2000년대 :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 추진**

○ ‘01년 ’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‘ 제정을 통해 물류·금융·관광 등 복합형 개발 추진

※ 법 주요내용 : 투자진흥지구 등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
투자자 생활편의 위해 교육·의료 특례 설정

○ 그러나,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개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성과는 미흡

□ 참여정부 : 새로운 시각에서 국제자유도시 과감히 추진

○ 대통령, '분권과 자율'의 국정 원리에 입각하여 종전 한계를 뛰어 넘는 '자치 모범도시'로 육성 의지 천명('03.2~)

-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획기적 분권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완화 및 핵심산업 육성 추진

→ 제주도의 내생적 발전역량 극대화하는 **'분권형 발전모델' 선도**

○ 이러한 구상을 각계 의견을 수렴, 구체화하여 '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에관한 특별법'(제주자치도특별법) 입법 완료('06.2)

<'제주특별자치도' 관련 대통령 말씀>

□ **´03. 2. 12. 지역토론회(당선자 전국순회토론회)**

○ 제주도가 먼저 분권 또는 자치권에 강한 의욕을 보인다면 제주도를 **분권의 시범도, 지방자치의 시범도**로 구상

□ **´04. 3. 3. 제주언론인과의 대화(청와대)**

○ 조직·인사·재정권은 물론 과세권을 포함한 자치입법권까지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는 **자치모범도시**를 만들어야 함.

□ **´05. 8. 23. 전국지방언론사 편집국장 간담회(청와대)**

○ 굉장히 수준 높은 자치도, **일종의 연방주에 가까운 자치도**를 만든다는 것이 대통령의 구상임

참고	제주자치도 특별법 제정 경과

□ 기본계획 수립

○ 제주도, 『특별자치도추진계획(안)』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 : ´04. 11. 30

※ 정부혁신분권위원회 내에 「제주특별자치도 지원특위」 구성('04. 9), 행정자치부에 「제주특별자치도추진지원단」 설치('04.11)

○ 제주도(안)을 바탕으로 정부혁신위원회 주관으로 「**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(안)**」 확정・발표 : ´05. 5. 20

○ 국무총리실에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설치 : '05. 7. 20

○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실시 → 단일광역체제 개편안 마련 : '05. 7. 27

○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확정 : '05. 8～11

- 제주특별자치도 실무추진위원회 및 추진위원회 심의

□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및 공포

○ '특별법(안) 확정, 국회 제출 : 05. 11. 22

- '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'도 흡수 통합(본문 363개조, 부칙 41개조)

○ 특별법(안) 공청회 개최 (국회 행정자치위원회) : '05. 12. 6

○ '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', '지방자치법' 개정법률 국회 통과 : '05. 12. 30

○ '06. 2. 9 특별법(안) 국회 의결

○ '06. 2. 21 특별법 공포 ('06. 7. 1 시행)

Ⅱ. 기본전략

◇ 제주도 스스로 성장활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
1. 차등적 분권을 통한 고도의 자치 실현

○ 제주의 지역여건에 맞는 발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선진적인 분권모델 도입

- 종국적으로 국방·외교를 제외한 전 영역의 권한 이양을 목표로 각종 권한을 대폭 이양

○ 자치역량 함양으로 권한 이양의 효과 극대화

○ 주민 참여·통제 강화 등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

2. 자유시장경제모델 구축을 통한 핵심산업 육성

○ 홍콩, 싱가폴과 경쟁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도록 정부규제를 국제 수준(Global Standard)으로 자유화

○ 규제자유화를 토대로 핵심산업 육성

-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규제특례 등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진 도모하되,

  · 관광, 교육, 의료, 청정1차, 첨단산업 등을 핵심산업으로 집중 육성

- 동시에 주민 생활편의·외지인 투자여건도 개선

□ 기본전략 개념도

국제자유도시
자생적 성장활력 극대화
고도의 자치 실현
○ 자치권 확대
○ 자치역량 강화
○ 책임성 확보
핵심산업 육성
○ 관광·교육·의료산업
○ 첨단 및 청정1차산업
차등적 분권
○ 지역특색에 따라 자치 범위를 타지역과 차등설정
자유시장경제모델 구축
○ 규제자유화
○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

Ⅲ. 자치분권 주요내용

기본방향

Ⅲ-1	자치권 확대

행정·재정, 입법, 자치경찰,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전반에 걸쳐서 중앙정부의 간섭과 의존에서 과감하게 벗어난 특별자치도 설치

□ 차별화된 법적 지위가 보장된 광역지자체, 특별자치도 설치

○ 자치권 범위, 규제 등에서 기존 지자체와는 크게 다른 새로운 광역지자체로서 '특별자치도'를 신설하여 지역형평성 논리 등 극복

< 지방자치법상 광역지자체의 종류 >

종 전	⇒	개 선
특별시, 광역시, 도		특별시, 광역시, 도, **특별자치도**

○ 행정체제를 7.27 주민투표결과를 반영하여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개편

종 전	⇒	개 선
도 + 4개 시·군 **자치2계층제**		특별자치도 + 2개 행정시 **자치1계층제**

○ 건설·교통, 해양 및 환경관리 등 **권한의 대폭 이양**(총 688건)으로 도지사·도의회가 도정을 주도하는 체제로 전환

※ 자치역량 성숙도를 보아가며 국방·외교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중앙사무의 **지속적 지방이양** 추진

□ 자치입법권 강화

○ 중앙정부권한을 **조례**로 정하도록 **대폭 위임**하여 입법기능 확대

- 종전에 대통령령·부령으로 정하던 사항을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(총 374건)

○ 도지사가 관련 부처에 **법률안 제출**을 **요청**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**지역문제 해결**을 위한 **발의권 강화**

< 법률안 제출절차 >

종 전		개 선
중앙부처 입안 → 정부입법절차 → 국회	⇒	도지사 → 지원위원회 → 중앙부처 타당성 검토 → 정부입법절차 → 국회

○ **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**

- 여건에 맞추어 선거구획정 및 직원 임용, 의정활동비, 총회의일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

□ 획기적 재정분권 추진

○ **지방교부세**(행자부) 및 **지방교육재정교부금**(교육부)의 지원 수준을 **법으로 보장**하여 소요재정 안정적 확보

※ 지방교부세의 3%,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.57%를 매년 특별자치도에 교부

○ 국고보조사업 및 이양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**국가균형특별회계에 제주계정 별도 설치**

※ 제주계정 설치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추진 중

○ 종전 시·군세(9개)와 도세(7개)를 **특별자치도세**로 일원화하여 도 전체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

○ 세율조정, 지방채 발행 등에 관한 **중앙정부의 승인·제한 폐지**로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부여

구 분	현 행	개 선
· 탄력세율 적용(9개 세목)	세율의 50% 가감	세율의 100% 가감
· 면허세, 농업소득세, 레저세	-	세율의 100% 가감
· 도축세, 사업소세	-	세액의 2배 범위 내

□ 자치경찰제 최초 도입

○ 자치도에 자치경찰단(총경급), 행정시에 자치경찰대(경정급) 설치

○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**치안업무**를 담당

- 주민생활안전, 교통, 지역경비, 사법경찰관리직무 등 수행

※ 관광경찰, 환경경찰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치안업무 추진

- 이를 위해 불심검문, 보호조치, 범죄예방 등 직무집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, 장비·복제 등도 국가경찰과 다르게 운영

※ 일반적인 범죄수사권은 행사 불가(범죄발견·현행범 체포시 국가경찰에 인계)

○ **국가경찰기구**와의 **유기적 협력체계구축**

-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참여하는 치안행정위원회 운영

-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배분 협약 체결, 통신망·인력운영 상황 공유 등 상시 협조체계 구축

□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으로 지방행정의 종합적 수행

○ 도와 유사·중복되는 사무를 취급하는 **특별지방행정기관**의 **업무를 이관**하여 업무효율과 주민편의도 제고

- 7개 기관은 특별자치도 출범('06.7.1)과 동시에 업무 이관

대 상 기 관	주 요 이 관 업 무
○ 제주지방국토관리청	· 국도 유지·관리 및 건설공사 부실방지 점검
○ 제주지방중소기업청	· 지역중소기업 지원 및 중소기업단체 협조
○ 제주지방해양수산청	· 항만시설운영 및 공유수면 관리
○ 제주환경출장소	· 지정폐기물 관리 및 수도시설 관리
○ 제주보훈지청	· 국가유공자 지원 및 보훈단체 관리
○ 제주지방노동위원회	·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
○ 제주지방노동사무소	·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고용안정

○ 7개 기관 이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도 **단계적으로 이관 추진할 계획**

Ⅲ-2 자치역량 강화

지역주민 및 공무원이 광범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자치·혁신역량을 국제수준으로 제고

□ 자율적인 조직 및 인사제도 운영

○ 도지사(집행기관)와 지방의회(의결기관)간의 관계설정에 대한 자율성 부여

- 현행 집행기관·의결기관간의 대립적인 관계설정에서 벗어나 새로이 특수형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

종 전		개 선
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과 지방의회를 분리시킨 기관대립형만 인정	⇒	기관대립형 외에도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 제정시, 다양한 기관구성 가능

※ 기관관계 설정형태 : 대립형, 통합형(위원회 형태 : 지자체장+지방의회), 절충형

○ 자치조직·인사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대폭 보장

- 행정기구·정원·인사운영 등에 관한 중앙정부의 관여를 배제하고, 총액인건비제도도 비적용하는 등 권한 일체 부여
-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기준, 직군·직렬 통합, 신규·승진임용 등도 도조례로 위임

□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공무원 경쟁력 확보

○ 공직충원시스템 개방을 통한 공무원 전문성·혁신역량 강화

- 직위공모제 도입, 개방형직위·외국인임용 확대 및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전국 응시 허용 등 충원과정에서의 경쟁체제 구축
- 다만, 지역대학 성적우수자를 우선 선발하는 등 지역인재도 육성

○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구축

-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공직혁신 유도
- 중앙정부의 공무원제도 개혁내용을 선도적으로 반영

※ 직무성과계약제(4급 이상), 성과주의 보수체계 강화 등

○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혁신역량 지속 개발

- 5급 이상 교육훈련에 관한 중앙권한을 이양하여 지역수요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제공
- 민간전문가의 교수채용을 활성화하고 공무원교육원장을 개방직으로 전환

□ 교육자치제를 주민의사 반영이 강화되도록 개편

○ 교육감·교육의원의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로 전환, 주민대표성 강화

종 전		개 선
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선거인단 선출(간선)	⇒	주민직선제에 의한 선출

○ **교육위원회를 도의회 상임위원회화**하여 기능중복 제거와 교육·학예에 관한 주민의사 반영 강화

- 교육위원회를 도의회로 통합하되, 교육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일반상임위와는 차별적으로 운영

	종 전	개 선
- 교육위원회 성 격	지방의회 별도기구 (위임형 의결기관)	도의회내 특수한 형태의 상임위원회
- 구 성	전부 교육관련자	교육의원 5 + 일반도의원 4

○ 지방교육행정에 관한 자율성 부여로 교육자치 역량 배양

- 부교육감 정수·사무분장, 보조기관 설치 등 조례로 위임

Ⅲ-3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

광범위한 자율성 확대가 도정의 방만 운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치적·사회적 통제시스템 구축

□ 주민권리 및 참여 확대로 도정의 책임성·투명성 확보

○ **주민소환제 최초 도입**으로 공직자에 대한 주민 직접통제시스템 강화

- 대상 : 도지사, 도의회의원, 도교육감
- 청구요건 : 선거권자 총수의 20%~30%의 범위 내 조례로 규정

※ 외국의 주민소환제도
- 미국 : 행정·입법·사법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모두 대상
- 일본 : 단체장, 의회의원 및 주요임명직 공직자 대상
- 독일 : 지방자치단체장(지방의원까지 확대 추세)

○ 주민투표 등 **기존 주민참여제도 개선**으로 주민참여 기회 확대

-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주민투표제 도입으로 행정투명성 확보
-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

※ 종전 1/20~1/5 범위 내 조례로 규정→ 1/50~1/5 범위 내 조례로 규정

- 조례제정·개폐청구를 외국인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청구요건도 완화

※ 종전 1/20 범위 내 조례로 규정 → 1/50 범위 내 조례로 규정

○ **예산편성과정**에 **주민참여**를 제도**화**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·건전성 확보

○ 주민자치기구를 법정기구화하여 주민참여 활성화

< 주민자치센터 ·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근거 >

종 전	⇒	개 선
행자부 지침 및 조례		법률상 운영 보장

□ 지방의회 통제기능 강화

○ 정무부지사, 감사위원장 등 주요공직자의 자질검증을 위한 **인사청문회** 실시로 도지사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

○ 대규모 개발계획 보고 의무화 등 집행기관 견제장치 강화

○ **정책자문위원제도** 도입으로 지방의정활동 지원 강화

- 상임위원회별 3인 이내 5급 상당 지방공무원으로 임용

□ 독립적 감사위원회에 의한 자율 감시체제 확립

○ 독립적 성격의 감사위원회를 최초 도입하고 정부합동감사는 배제

○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장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, 전체(7인 이내) 중 도의회가 3인을 추천

□ 상호협약(MOU)에 의한 성과관리체계 구축

○ 국무총리와 특별자치도간 성과협약을 체결

- 자치도의 운영목표 및 목표달성도 평가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상호협약 체결

○ 목표달성도 평가결과에 따라 국세의 세목 또는 징수액 이양 등 행 · 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자발적 성과제고 노력 유발

- 협약 체결 및 성과평가결과 활용방안은 지원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

Ⅳ. 향후 과제

1 규제 자유화 본격 추진

○ 금번 특별법에 미반영된 과제들에 대한 규제 개선 우선 추진

예) 교육, 의료상의 진입규제 완화

○ 규제자유지역을 지향하는 행정규제의 전면적 정비

- 규제(8,040여개) 중 필수규제와 개선대상규제, 비필수규제 분류 작업 착수 (‘06. 하반기)
- ‘07년부터는 개별규제에 대한 존치·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국제수준으로 본격 정비

2 중앙정부 권한 추가 이양 및 자주재정권 강화

○ 지역여건, 혁신역량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앙부처 협의·승인 사항을 최소화하는 등 추가적 권한이양 추진

○ 제주도에 의한 지역발전 노력의 성과가 자체재원의 확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재정구조로의 전환

- 국세세목의 일부를 이양하거나,
- 또는, 제주도의 추가적인 노력으로 국세수입 증가시 일정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 등 강구

3 지속적 성과관리 및 지원

○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의 성과를 점검하여 개선책 강구

- 자치경찰, 주민소환제, 감사위원회 등 신규 제도들이 당초 목적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도 분석하여 미비점 보완

○ 핵심산업 육성 과정에서 제주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 강구

○ 성과관리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전담기구 설치

-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의 지원위원회를 통해 특별자치도 제도 정착 지원

- 국무조정실에 사무처를 한시적(5년)으로 설치하여 뒷받침

< 참고 > 핵심산업 육성 주요내용

기본방향

□ 정부 규제자유화를 통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핵심산업 육성 기틀 마련

○ 교육·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제 우선적 완화 (1단계)

○ 단계적으로 Negative System을 지향하는 규제자유화 추진

< 규제자유화 추진계획 >

- 제주도와 각 부처는 정부규제 중 '필수규제'를 선정하여 금년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
- 지원위는 제주도와 각 부처가 제출한 필수규제(안)를 검토·심의하여 종합적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, 별도 법안으로 입법화

□ 산업육성전략 및 사회복지시책 등을 지역 실정에 따라 자율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 원칙적 이양

□ 국제자유도시·친환경적 생태도시에 적합하도록 출입국관리·환경자원 관리제도 등 선진화

⇒ 규제자유화, 권한이양, 제도선진화 등을 토대로 핵심산업을 육성하여 성장동력 극대화

□ 개념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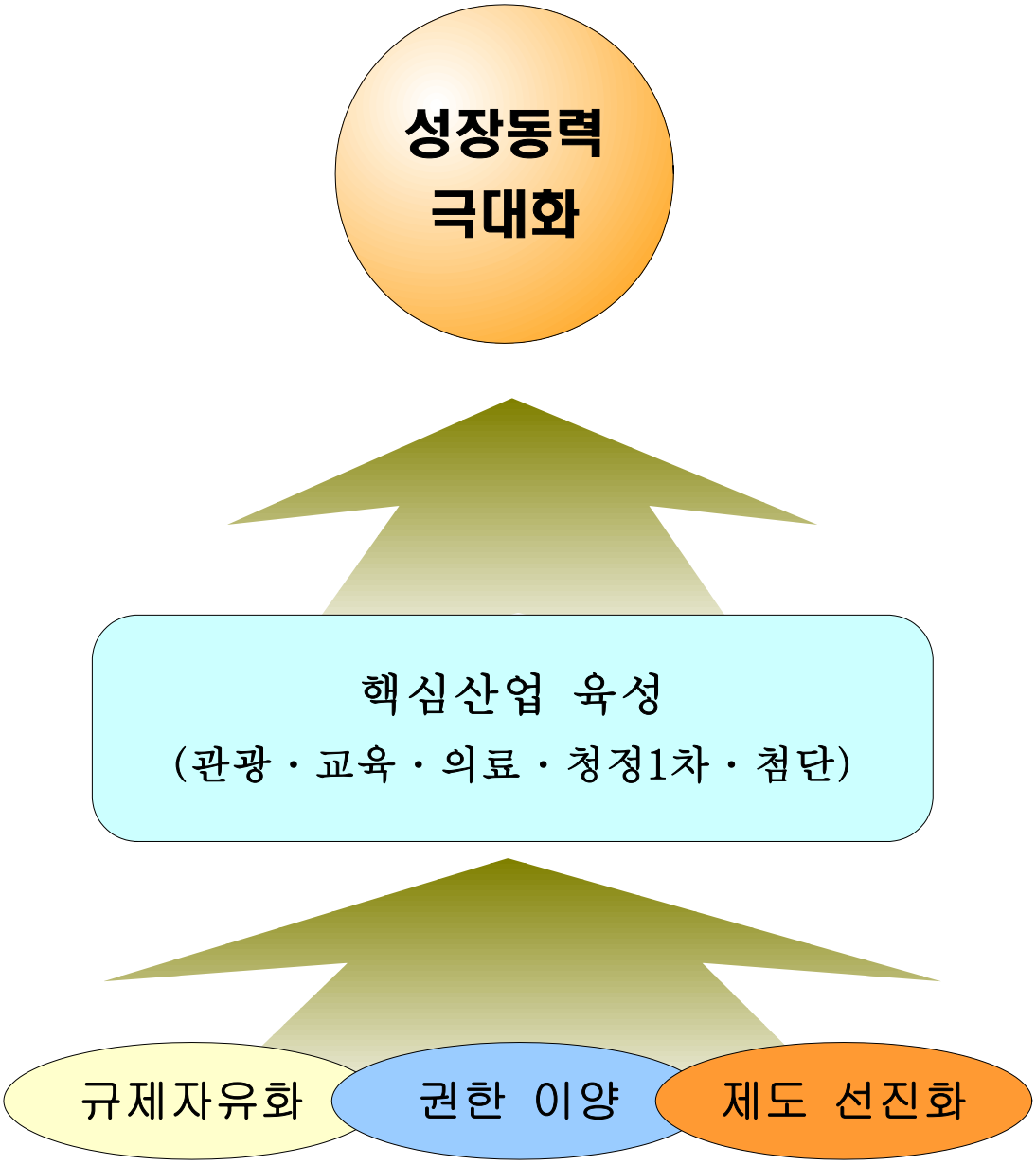

1	핵심산업 육성 : 관광 · 교육 · 의료 · 청정1차 · 첨단산업

관광

세계 수준의 종합 관광 · 휴양지 및 국제회의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, 조직 · 기금 등 인프라 확충

□ 자치를 바탕으로 **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**

○ 세계적 수준의 종합 관광 · 휴양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- 도 전역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, 컨벤션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

※ 국제회의도시 지정현황('06.4월현재) : 서울시, 부산시, 대구시, 서귀포시

-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쟁력 강화책 마련이 가능토록 설립 허가 · 감독권 이양

- 관광호텔의 등급 심사제도 운영권한을 이양하고 여행업의 등록기준을 조례에 위임하여 관광서비스의 질을 제고

○ 관광산업 육성인프라 확충

-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기존 관광 관련 기구를 통합, '제주관광진흥공사(지방공기업)'를 설립하여 관광산업 육성의 핵심 주체로 활용

- 한국관광공사 등 공기업과의 업무협조체제 강화

○ 제주도 독자적인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여 호텔 등 관광산업 육성사업 지원

-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카지노업 납부금 및 출국납부금을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별도 전출받아 재원으로 활용

※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출 규모(매년 100여억원)

- 카지노업 납부금 : 80여억원, 출국납부금 : 20여억원

□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

○ **내국인 면세점**(JDC) 쇼핑이 활성화되도록 이용제한 완화

- 구입한도 : 300달러 → 400달러(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)

- 판매품목을 제주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(제주도여행객에 대한면세점특례규정)

□ 외국 방문객 유치가 용이하도록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No Visa 입국 확대 등 **출입국 관리제도를 개선**

○ 세계 192개 국가 중 무사증입국불허국가를 현행 22개국에서 10여개 국가로 축소·조정 추진

※ 국내 타 지역은 63개국에 대해 무사증 입국 불허 중

교육

국제 경쟁력을 갖춘 교육기관을 유치하여 해외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대폭 강화하여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합하는 차등화된 교육서비스 제공

□ 외국 교육기관 설립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규제 완화

○ 외국대학 뿐 아니라 초·중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허용으로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녀 교육문제 해소

종 전	⇒	개 선
외국 대학만 설립 허용		외국 초·중·고까지 설립 허용

□ 초·중등 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

○ 학교장의 자율권이 대폭 강화된 '자율학교' 지정·운영

- 차별화된 학교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, 교장임용자격 등 광범위한 특례 인정

※ 교육과정 및 교과, 교과용도서 사용, 수업연한, 학기, 수업일수, 교원 배치기준, 교장임용자격, 산학겸임교사 임용자격 등 자율성 부여

- 우수교원 유치 및 특별근무수당 지급 등을 통해 유능한 교원 확보

○ 국제고등학교 설립·운영의 자율성 확대

- 국제수준의 교육과정 편성·운영이 가능하도록 전국적 기준과 차별화되는 특례 인정

※ 교육과정 및 교과, 교과용도서 사용, 교장·교감 및 교사 임용자격, 학교평가, 수업연한, 학기, 수업일수, 교원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기준 등

- 외국인 입학 및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 허용을 통한 외국어 교육 강화

- '자율학교'에 준하는 우수교원 유치제도 마련

□ **외국대학 유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 강화**

○ 국내 대학내 외국대학(원)의 교육과정(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) 설치 허용 등 외국대학과의 교류확대

○ 교지, 시설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 확보기준을 완화하여 대학 설립 희망자의 초기 비용 및 위험부담 경감

○ 토지 무상 임대, 연구비 등의 행·재정적 지원 강화

□ **국내 대학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각종 지원 강화**

○ 다양한 형태의 대학이 설립되고 외국대학과의 교류도 확대되도록 관련 규제 완화

- 학사학위 과정과 전문학사 학위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 설립을 허용

- 도내대학과 외국대학간의 교육과정 공동·연계운영을 허용

○ 대학운영, 시설건축 자금지원 및 부지 공여 등 지원 확대

의 료

외국의 유수 의료기관을 유치하고, 의료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해외원정 진료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는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육성

□ 의료서비스산업 관련 진입규제 완화

○ **외국 영리법인이 병원을 설립**할 수 있도록 의료법의 규제를 완화하고, 투자유치효과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은 비적용

※ 외국병원 개설은 도지사가 허가하되,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 설정

○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으로 해외 의료기관 유치 촉진

□ 의료법의 각종 규제도 국제자유도시에 부합되도록 개선

○ 의료인의 **비전속 진료**(프리랜서 의사), 외국 영리법인 병원의 **원격 진료** 허용 등 다양한 진료 서비스 형태 확대

○ 외국 영리법인 병원이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**외국인 환자에 대한 소개·알선행위** 허용 (국내환자는 적용 제외)

□ 의료관광(Medical Tourism)의 중심지로 육성

○ 제주형 의료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모델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

※ 의료분야 투자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

- 일정규모 이상 투자시 법인세 등을 감면 하고 국·공유지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 혜택 부여

□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

○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통하여 공공의료 지속 확충

- 보건의료발전 주요시책, 우수병원 육성 및 기존 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보방안 등 반영
-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·운영하여 지역여건에 부합하도록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및 특례병원 허가

○ 외국인 진료소 및 특별응급의료센터 지정 제도를 운영하여 외국인 진료편의 강화

※ 현재는 외국인 전담 의료기관이 없는 실정

≪주요국의 의료관광산업 현황≫

국 가 명	주 요 실 적
싱가포르	2004년 27만 명 해외환자, 2.9억불 외화수입 실현 ※ 2012년까지 연 100만 명 해외환자 유치, 30억불 외화수입, 약 1만 3천개 일자리 창출 목표
태국	2005년 128만 명 해외환자, 8.9억불 외화수입 실현 ※ 주요 해외환자는 일본, 미국, 영국, 독일 등 선진국 중심
인도	2004년 18만 명의 해외환자, 3.3억불 외화수입 실현 ※ 매년 25%성장, 2012년 20억불 외화수입 전망

※ 전경련 보고서(2006. 3.23) 참조

청정1차산업

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 농업 육성과 수산자원 관리, 소득 보전시책을 추진토록 자율성 부여

□ 독자적 농업관리체계로 전환하여 경쟁력 강화

○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 농업육성이 촉진되도록 관련 권한 이양

- ‘농·수산업 종합발전계획’, ‘친환경농업육성계획’ 등 자체 수립
-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“제주도농어촌진흥기금” 설치

○ 농어촌지역, 농업진흥지역 등을 제주도가 여건에 맞추어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

○ 전국 공통의 **직접지불제와** 구분되는 별도의 소득보전 시책을 **도지사가 자체시행**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

○ **제주흑우 유전자원의** 고유 순수성을 보존하고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정란 등의 도외 반출제한

□ 수산자원 관리의 자율성 보장

○ **육상해수양식어업·수산종묘 생산어업, 어장자원관리** 및 **기르는 어업 육성** 등 각종 권한을 자치도로 이양

※ 육상해수양식어업 : 인공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

○ **지방어항**의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자율권 부여

- 해수부와의 사전 **승인·협의절차 생략**

첨단산업

투자유치가 활성화되도록 조세감면·토지 장기임대 대상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원체제 강화

□ 법인세 등 감면대상사업 **범위를 대폭 확대**하여 첨단산업 활성화 지원

○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**IT·BT, 의료, 교육산업 등 추가**

○ 총사업비 요건도 500만불 이상으로 완화하여 수혜대상 확대

	현 행	개 선
- 투자분야	관광·문화·실버등 6개	IT·BT·의료(영리)·교육까지 확대
- 총사업비	1천만불(미화) 이상	5백만불 이상

※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사항

□ IT, BT 등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**국·공유재산의 장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기회 부여**

○ 첨단산업용 국·공유지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설정(갱신 가능)하고, 임대료는 최저 연 1% 적용

□ **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**

○ 외국인 주거 단지 조성으로 **국내외 기업 적극 유치**

- 제주도에 소재지를 둔 무주택자인 외국인에 대해 주택을 특별공급

○ 고용규제를 **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완화**

※ 국가유공자 의무고용, 고령자 의무고용 적용 특례 인정

2 산업 인프라 확충 및 여건 조성

건설 · 교통

도로, 토지이용관리, 도시계획, 교통계획 등 전반에 대하여 중앙의 권한을 이양하고, 투자유치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

□ **토지이용 · 관리체계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**

○ 광역도시계획, 도시관리계획, 공원녹지계획 등을 독자적으로 수립토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

○ 토사채취허가, 채석단지 지정 · 해제 등도 도지사 책임하에 종합 보전 · 관리토록 위임

○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권한도 이양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 기간(인 · 허가 등) 단축

□ **각종 건설 · 교통 관련 시설 및 업무 일괄 이양**

○ 국도를 지방도로 전환하여 도지사가 도내 모든 도로를 관할토록 위임

○ 주택건설사업 등 각종 건설 · 교통규제를 일괄 이양하여 규제 철폐 여부 · 강도를 스스로 결정토록 위임

□ **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**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
○ 토지비축 제도를 확충하여 개발용 토지의 조기확보 및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

- 공유재산 처분·임대수익과 토지채권 발행금 등을 **재원으로 한 토지특별회계를 운영하여 토지비축사업 추진**

○ 민간사업자, JDC 등에게도 일정요건 하에 **토지수용권을 부여**하여 투기 억제 및 토지 매수 신속화

※ 종전에는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특별법의 사업승인 외에 개별법의 토지수용 조건을 갖춰 별도의 추가 인·허가 절차 필요

○ 도시개발구역 지정,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이양을 통하여 **사업 추진기간 단축** 추진

□ **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(JDC)**의 기능을 핵심산업 추진이 가속화되도록 개편

○ 관광·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주택사업 등 인프라 지원 기능 강화

○ 교육·의료·건강산업 육성 지원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

○ 도지사 소속 공무원을 비상임이사로 두는 등 제주도와의 업무협조체계 강화

환경

환경을 전국기준 이상의 범위 내에서 자율관리하도록 위임하여 친환경적 생태도시로의 발전기반 마련

□ 사전환경성 검토·환경영향평가는 객관성·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제주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

○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에는, 환경부 협의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, **객관적 위치의 전문기관 검토** 절차를 신설·운용

○ 다만, 사업시행자가 도지사인 경우에는, 현재와 같이 **환경부 협의(의견조회) 절차를 존치**

□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가 가능하도록 대기·수질·폐기물 관리권한을 전면 이양

○ 다만, 관리기준은 국가기준 이상으로 설정하여 **권한 이양에 따른 환경파괴 소지 차단**

□ 지하수 자원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

○ 지하수의 공적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지하수에 대한 관리 강화

- 부존지하수는 도지사가 공공의 자원으로서 엄격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·이용 시 허가·신고 권한 부여
- 가뭄, 지하수 고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취수량 제한 및 일시적 이용중지 조치 등도 가능토록 근거규정 마련

○ 다기화된 지하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, 수자원관리종합계획(10년 단위) 수립·시행을 통하여 **지하수자원의 체계적 관리 강화**

종 전		개 선
지하수법·먹는물관리법·온천법에 따라 개별관리	⇒	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기본조례로 통합관리

□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강화

○ 천혜의 자연생태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·관리할 수 있도록 "환경기본조례" 제정 및 "환경보전기본계획" 수립·시행

○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차등(절대·상대·관리보전지역) 관리함으로써 자연생태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보호

○ UNESCO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(한라산 일원, 범섬 등)에 대한 관리 강화

복지

전국 최소기준 이상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관련 사항을 자치도가 스스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「맞춤형 복지」 시현

□ 사회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도로 이양

○ 노인·장애인·아동복지, 보육 분야 등 각종 복지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

○ 다만, 국민의 기본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가에서 관리하는 **최소한의 기준 (National minimum) 이상**으로 관리토록 원칙 설정

※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, 장애의 종류 및 기준 등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사항은 이양 대상에서 제외

□ **'건강도시'** 건설을 위한 보건분야 제도개선

○ 건강거리(금연거리) 지정·운영 등 금연사업 적극 추진

○ 식품접객업 운영 기준 강화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위생관리 강화